

인권·성평등센터운영규정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부산가톨릭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 인권·성평등센터의 운영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역할) 인권·성평등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는 본 대학교 구성원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대학 내 인권문화를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한다.

제3조(센터의 독립성 등) 센터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보장된다.

제 2 장 조 직

제4조(센터장)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며, 인권·성평등 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외부전문가 또는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.

제5조(인력) ① 센터의 인력은 본 대학교의 인사규정에 따라 임용된 직원이나 전문상담원을 둘 수 있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권침해 등에 대한 상담·조사, 연구, 교육활동 등 전문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비전임교원이나 전임연구원을 둘 수 있다.

제6조(업무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인권침해 예방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
2. 성희롱·성폭력 예방 및 사건처리에 관한 사항
3. 대학 구성원의 인권교육 및 홍보
4. 운영위원회 구성·운영과 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
5. 인권침해 등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
6. 센터 인력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·훈련 지원
6. 인권 기구 및 지역 관련 단체와의 교류·협력
7.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

제 3 장 운영위원회

제7조(심의기구)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권·성평등센터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제8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, 필요에 따라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.

② 위원장은 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며,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.

③ 위촉위원 중 학생 위원은 최소 2명 이상으로 하되,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

록 하여야 한다.

④ 위원은 인권·성평등조사위원회와 인권·성평등심의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.

제9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하며, 회의의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에 따라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.

제10조(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해촉 통보를 아니하였으면 연임된 것으로 본다.

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.

제11조(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센터 운영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
2. 위원장이 요청한 중대한 사안
3. 그 밖에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
제12조(회의)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, 재적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가 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 다만,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 시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3조(회의록)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.

②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전원과 작성자인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.

제14조(간사)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

제 4 장 재 정

제15조(회계연도) 센터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를 따른다.

제16조(예산운용) 예산의 편성, 집행 등의 사항은 본 대학교 예산관리규정을 따른다.

제 6 장 보 칙

제17조(지침) 이 규정에 따라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통해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.

제18조(준용)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상위법과 본 대학교의 제 규정을 준용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3월 1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수행한 업무는 이 규정에 의해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.

③ (다른 규정의 폐지)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종전의 “인권보호규정”, “성희롱·성폭력예방및처리에 관한규정”, “인권·성평등센터운영위원회규정”은 폐지한다.